#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7

발의연월일: 2020. 12. 14.

발 의 자:성일종·김영식·홍문표

김태흠 • 이태규 • 권영세

신원식 • 이명수 • 양금희

조수진 • 태영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관광특구가 다수 있으며,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의2 신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을 "30퍼센트를"로 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시·구는 3만 명, 군은 2만 명) 이상일 것 제73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2(관광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 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 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 군 ·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 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 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 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 것 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시·구는 3만 명, 군은 2

- 2. (생략)
-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u>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u> 초과 하지 아니할 것
- 4. (생략)
- ② (생략)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① (생략)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신 설>

<u>만 명) 이상일 것</u>
2. (현행과 같음)
3
30 म
 센트를
<u> </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하여야 한다</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관광특구의 부동산가
격 안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 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 다.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 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